

보도 일시	2022.3.23.(수) 석간 2022.3.23.(수) 06:00	배포 일시	2022. 3. 22.(화) 14:00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실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고송주 (044-200-5630)
		담당자	사무관 김형원 (044-200-5633)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3.23.(수)~5.3.(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

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하여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규정하였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 (중간가공 폐기물 120일)까지 보관 가능하며,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는 **3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폐업 사

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 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라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 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 시행될 예정이다.

1 제정 경과

- 주철현('20.6.30.) · 정점식('21.2.17.) 의원 대표발의 → 국회 본회의 의결('21.6.29) → 공포('21.7.20)
- 시행일 : 공포 후 1년('22.7.21.)
 - * 경과조치(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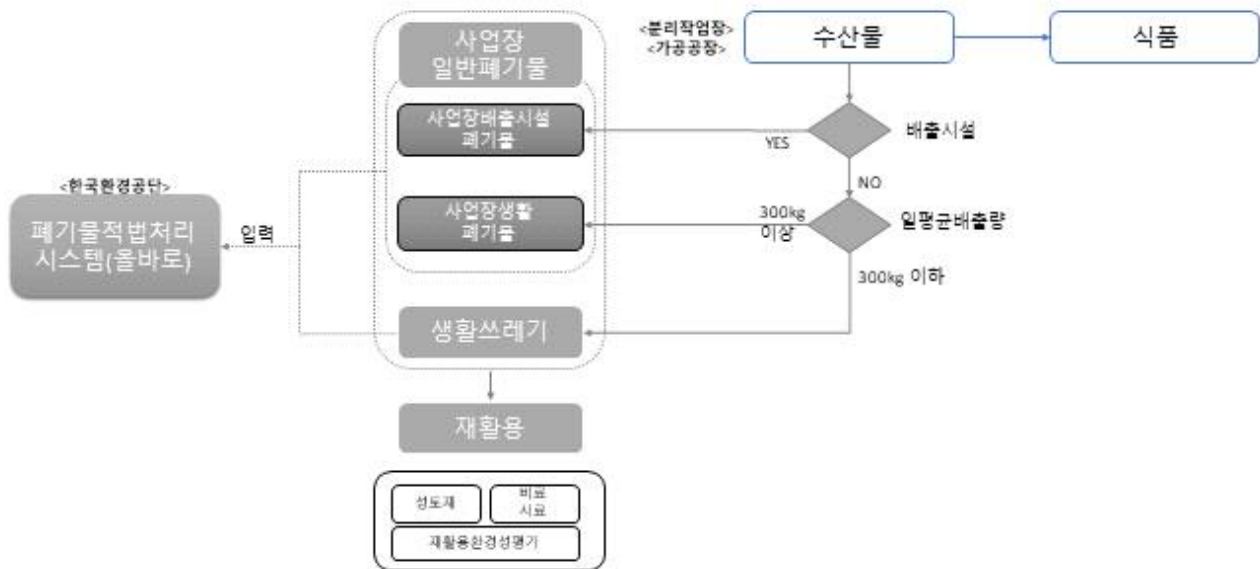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 (목적)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법 제1조)
 - * 수산부산물의 정의 :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법 제2조)
- (통계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제출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관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6조)
-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5조)
- (분리배출의무)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분리배출 의무를 부과(법 제7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9조)
 -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또는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 (자원화·재활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법 제16조)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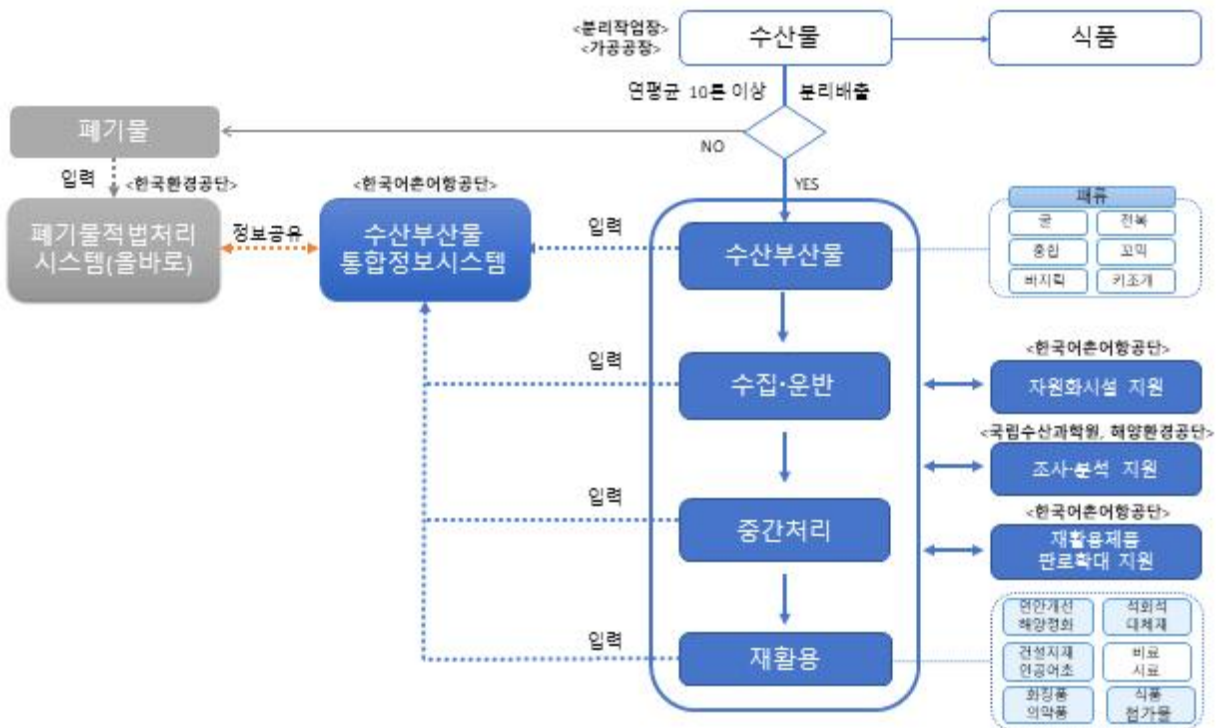
참고2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 체계 전·후 비교

□ 기존 「폐기물관리법」 상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 체계



□ 「수산부산물법」 시행(’22.7.21~) 시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 체계



①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 법의 적용대상인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정함(시행령안 제2조)

* 패류 중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바지락, 키조개에서 단순가공공정을 거쳐 식용으로 사용되는 내용물과 그 밖의 혼합물을 제거한 껍데기

②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규칙안 제3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산자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수산부산물의 발생량·배출량·이동경로 등을 관리(시행규칙안 제3조제2항)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시행령안 제3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시행령안 제5조)

④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시행령안 제6조)
 - 패각 등 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을 운영하며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며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산업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안 제7조)
 - * 수산부산물은 분리배출 단계에서 최대 180일 보관 가능
-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대상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안 제9조)

5 수산부산물의 처리

- 수산부산물의 위생적 처리 등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시행령안 제10조),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시행규칙안 제4조~제7조)를 구체적으로 정함
- 수산부산물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안 제11조)
 - * 수산부산물은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최대 120일 보관 가능하며, 세척·소성(燒成) 등을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하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 연장(최대 1년) 가능

6 수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세부분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시행규칙안 제2조)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함(시행령안 제16조)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에 '재활용 제품의 안전성 검증 및 판로 확대 사업'을 추가(시행규칙안 제9조)
-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안 제17조)
 - *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교육, 홍보, 전시, 관련 박람회 개최, 관련 우수 기술 선정, 재활용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
 -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관련 시험·조사 또는 분석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의뢰서·시료를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제출(시행규칙안 제8조)

참고4

굴 패각 부산물 적재 사진

□ 굴 패각부산물 적재 사진 (육상적재)



□ 굴 패각부산물 적재 사진 (해상방치)



※ (양식 굴 사례) 굴 패각은 매년 약 12만톤(전체생산량의 40%)가 보관·방치되며, 현재 총누적량은 92만톤 이상(*)으로 추정

－ 굴 가공장 주변(약 48만톤), 패화석 사료·비료처리업체(28.3만톤), 박신장 (10.8만톤) 간이집하장 14개소(5만톤) 등 추정

* (집계불가) 산지매립, 어장투하, 자체 농지 활용 등